

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(제5조제1항제2호 관련)

구 분		계 급
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	여단장·연대장	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
	대대장	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
	지역중대장 및 직장중대장	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
예비전력 관리기구	일반군무원 5급	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
	일반군무원 6급 이하	예비역 또는 퇴역 위관급 장교·준사관·부사관

비고: 위 표에서 퇴역은 「군인사법」 제41조제2호의 사유로 현역에서 바로 퇴역한 경우만 해당한다.